

론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어도 용인하던 사회적 풍조가 변하여 이제는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둘째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이 약화되면서 언론의 자유보다는 언론의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도래하였다. 셋째 1980년대 말부터 언론은 강압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화되는 동시에 언론시장이 개방되어 양적으로 급팽창하는 과정에서 보도에 의한 개인적 피해가 속출하게 되었다. 넷째 아직 우리 언론과 언론인들이 일반적으로 윤리의식이나 준법의식이 약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이재진, 2002참조).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각 해결 방식의 운용 현황과 그 개선방향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필자의 견해를 덧붙이고자 한다.

2. 언론사의 자율적 구제과 개선방향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갖는 특수한 위치에서 볼 때, 언론에 의한 명예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비록 그 동안 우리 언론에서는 이러한 자율적 해결방식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혁의 요구가 점증하는 가운데 언론이 외부의 강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율에 의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언론사의 자율적 해결 방식은 사전예방과 사후처리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사전예방

무엇보다도 먼저 언론사들은 보도에 의해 명예권 침해가 일단 발생한 후에는 원상복구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언론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언론윤리 및 법제 교육을 통해 기사를 작성할 때 항상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언론인들은 언론윤리나 법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아직도 제도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장치나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 언론사는 사내에 신망 있고 능력을 인정받은 중견 언론인을 옴부즈맨(ombudsman)으로 임명하여 기사에 대한 자체 비평을 상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언론종사자들에게 기사 작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시정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일부 언론사들은 자사 보도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비평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비평은 대부분 보도방향이나 기사처리 방식에 대한 비평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도에 있어서의 인격권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 상임으로 옴부즈맨을 채용하여 자사 보도 기사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하거나 고정칼럼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언론중재 신청이나 명예훼손 소송 제기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더구나 손해배상 인용액의 규모가 크게 증대되면서 다수 언론사들이 법조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거나 기사를 사전에 열람하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

에 나섰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이수형, 2002).

명예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취재보도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취재과정에서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반드시 확인작업을 해야 하고, 둘째 기사작성과정에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신원을 가급적 밝히지 말 것이며, 셋째 인터뷰 기사의 경우 인터뷰 내용을 기자가 삭제하거나 축소할 때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내용이나 원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넷째 초상권과 관련된 것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이다(임병국, 1999).

사후처리

우리 언론계의 윤리강령은 일반적으로 반론권을 인정하고 오보의 시정을 약속하고 있다. 1996년에 기자협회와 편집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새로 작성한 신문윤리강령 제6조는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천요강 제10조 5항에는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개별 언론사들도 유사한 윤리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중앙일보의 윤리강령과 세부지침은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바로 잡으며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조항과 “오보나 기타 실수가 발견됐을 때는 지체없이 정정 기사를 내고 관계 당사자가 반론을 요구할 때는 성의 있게 지면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른 언론사들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은 윤리강령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이 같은 윤리강령에 의거, 보도에 의해 인격권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일단 제기되면, 그것을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즉각적인 피해구제조치에 나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기사에 의해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

특히 오보가 확인되었을 경우, 언론사는 공신력을 지키기 위해 이 사실을 숨길 것이 아니라 즉각 정정보도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오보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일단 오보가 확인되면, 그 사실을 즉각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 그럴 경우 언론사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공신력 손상을 입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진실보도의 가치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감추려했다가 나중에 진상이 드러난다면 해당 언론사는 진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되어 공신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언론은 정정보도를 내는 데 소홀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자율적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동아일보(독자인권위원회), MBC(시청자주권위원회) 등 일부 중앙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언론피해구제 기구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제도가 아직 모색단계에 있어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위에서 살펴본 ombudsman 제도나 자문변호사 제도와 결합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기사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확대 발전될 수 있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수형, 2002).

3.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구제와 개선방향